고용노동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3. 2. 16.(목)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 황효정 (044-202-7611)
		담당자	사무관 이혜민 (044-202-7609) 주무관 박재형 (044-202-7396)
	노사협력정책관 노사 관행개선 지원TF	책임자	과 장 조충현 (044-202-7692)
		담당자	사무관 이창기 (044-202-7878)
	공공노사정책관 공무원노사관계과	책임자	과 장 권구형 (044-202-7647)
		담당자	사무관 박재형 (044-202-7981)

노동조합의 서류 비치·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**2.16.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**(민간 253개, 공무원·교원노조 81개)를 대상으로 한 「**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**」(이하 '노조법') 제14조에 따른 **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·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*을 발표**했다.

* '22.12.29.~'23.1.31.까지 한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후 2.1.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(표지 1쪽, 내지 1쪽)를 관할 행정관청(고용노동부 본부·지방노동관서)에 보고하도록 요구

참고 : 노동조합법 상 비치 및 보존 의무 대상서류(노동조합법 제14조)

- **(비치) ①조합원 명부, ②규약, ③임원의 성명·주소록, ④회의록,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**
  ※ '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'란 예산서, 결산서,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,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,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,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,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말함(시행규칙 제8조)
- **(보존) ④회의록,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**는 **3년간 보존**

<결과보고 현황>

제출 마감일인 2월 15일 24시 기준, '21년 이후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중 **36.7%(120개)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**하였다.

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**자율적으로 비치·보존 여부를 점검**하고, **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**토록 하는 등 **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**으로 **점검 결과를 보고**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, **대다수 노동조합(63.3%, 207개)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.** 세부적으로는 점검 결과 **일체를 제출하지 않은** 노동조합('전체 미제출')은 **54개(16.5%)**이며,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하였으나, **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**('일부 미제출')도 **153개(46.8%)**에 달했다.

이러한 결과는 양대노총에서 **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**하기 위해 **내지 제출을 거부**하는 **현장 대응지침을 배포**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.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**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**,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현행 법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오히려 **'깜깜이 회계'라는 불신을 자초**하는 것이다.

상급단체별로는 **▲전국노총·대한노총·미가맹(41.6%) ▲한국노총(38.7%) ▲민주노총(24.6%)** 순서대로 제출 비율이 높았으며, 특히 사전에 총연맹차원에서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내용의 **대응 지침을 마련**하였음에도 불구하고 **상당수의 한국노총 회원조합(67개)이 내지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.**

구분	점검대상	미제출			제출[3]	기타[4]	제출비율[5]
		소계	전체 미제출[1]	일부 미제출[2]			
한국노총	174	106	30	76	67	1	38.7
민주노총	67	49	6	43	16	2	24.6
전국노총·대한노총·미가맹	93	52	18	34	37	4	41.6
합계	334	207	54	153	120	7	36.7

1) 자율점검결과서, 증빙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2) 자율점검결과서, 증빙자료 중 표지 혹은 내지 등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3) 자율점검결과서, 증빙자료 중 표지와 내지 전부를 제출한 경우(다만, 추가 검토과정에서 제출된 증빙자료가 불인정될 수 있음)
4) 해산신고 등으로 점검 대상노조가 부존재하는 경우
5) 유효한 점검대상 중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비율(=3)/1)+2)+3)))

조직형태별 제출비율은 **▲기업별노조 등(46.2%) ▲산별노조 및 지역·업종별 노조 등 초기업노조(30.4%) ▲연맹·총연맹 등 연합단체(20.3%)** 순서대로 나타났다. **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**하고 기업별노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**초기업노조, 연합단체**가 **현행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.**

구분	점검대상	미제출			제출	기타	제출비율
		소계	전체 미제출	일부 미제출			
기업별노조 등	173	92	24	68	79	2	46.2
초기업노조	93	64	19	45	28	1	30.4
연합단체	68	51	11	40	13	4	20.3
합계	334	207	54	153	120	7	36.7

조직대상별로는 ▲**공무원·교원 노동조합(48.1%)** ▲**일반 노동조합(33.1%)**으로 상대적으로 **공무원·교원 노동조합의 제출비율이 높게** 나타났지만 **공공부문** 노동조합도 **제출 비율이 절반 이하**로 **회계투명성 관련된 법 준수 의식이 낮은 것**으로 나타났다.

구분	점검대상	미제출			제출	기타	제출비율
		소계	전체 미제출	일부 미제출			
일반	253	166	41	125	82	5	33.1
공무원·교원	81	41	13	28	38	2	48.1
합계	334	207	54	153	120	7	36.7

<노조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>

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한 120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존 비치 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 종결하고, **전체 미제출 및 일부 미제출** 노동조합 207개에 대해서는 **노조법 제27조 위반**에 따른 **후속 절차를 진행**한다.

우선, **미제출 노동조합**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**2.17.부터** 즉시 **시정기간(14일)을 부여**하고, **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**를 진행한다. **시정기간**동안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(본부·지방노동관서)에 **출석**하거나 **서면으로 의견을 제출**하여 소명할 수 있다. 이르면 **3.15**에는 **노조법 제27조 위반**에 따른 **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**될 것으로 보인다.

아울러,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수차례의 출석 조사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**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**, 서류 비치·보존에 대한 **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근거**하여 **서류 비치·보존 여부를 확인**하기 위한 **현장조사**도 병행한다. 노동조합이 **현장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**하는 경우에는 **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**에 따라 **과태료 부과**가 가능하다.

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**지속적으로 밀착지도**하는 한편,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밝혀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**회계 공시 제도 도입,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강화,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** 등 **제도개선도 함께 추진**할 방침이다.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서류 비치·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조합원이 **조합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제**로 노동조합의 **민주성, 자주성과 직결**된다고 본다.”라며, “이번 점검이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노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**노동조합이** 위법사항을 **스스로 시정**해나가도록 **독려**하는 한편, **점검결과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**해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[관련 규정]

■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4조(서류비치등)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1. 조합원 명부(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)
2. 규약
3. 임원의 성명 · 주소록
4. 회의록
5.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

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시행규칙 제8조(재정장부와 서류)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서
2. 결산서
3.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
4.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
5.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
6.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
7.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

■ 법 제27조(자료의 제출)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시행령 제12조(자료제출의 요구)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.

■ 법 제96조(과태료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
2.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

■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조(정의) 1. “질서위반행위”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■ 법 제22조(질서위반행위의 조사) ②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·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■ 제57조(과태료) ①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